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정 2015.07.

개정 2016.06.

개정 2019.0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 7층에 소재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이라 함)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 경기콘랩을 이용하는 모든 자
2. 회원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
3. 운영자 : 경기콘랩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관계자
4. 창작팀 :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작업실 이용 자격을 취득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 프로젝트팀

제3조(개관 및 휴관) 경기콘랩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2.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기콘랩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시간) 경기콘랩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콘랩 7층은 회원 대상으로 평일 9시 00분부터 21시분까지, 6층은 창작팀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운영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여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
3.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개관 시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운영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자
2.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단,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기콘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행위의 제한) 경기콘랩 이용자 및 창작팀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 발각시 차후 경기콘랩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경기콘랩 내 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도난 행위
5. 타인의 정보 도용
6. 경기콘랩 내에서의 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상업행위
7. 타인을 스톱(stalk)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8.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9. 대여시설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0. 대여시설 및 물품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경기콘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2.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하는 행위
13.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14. 사전 통지 없이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15. 경기콘랩 공간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 행위
1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식물물을 섭취하는 행위
1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18. 기타 경기콘랩 관리 필요에 따른 운영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 2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7조(권한) 시설 및 물품사용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점검·보수·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시설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2. 대여시설 및 물품의 범위, 대여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에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

1. 경기콘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가. 인포데스크
 - 나. 자료실
 - 다. 비상계단 (재난, 재해 등 비상상황 시 제외)
 - 라.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10조(시설의 범위) 경기콘랩 내 시설(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콘랩 시설은 사용신청 및 관계자 승인을 통해 외부에서 사용하는 「대여시설」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으로 한다.
2. 「창작공간」 및 창작장비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종류) 경기콘랩 시설은 제10조(시설의 범위)에 따라 「대여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물품」으로 분류하며 종류는 그 다음과 같다.

1. 「대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별동별(L2) : 7층 1개실 100석 규모, 강연·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간

- 나. 여우별(L3) : 7층 1개실 50석 규모, 강의실
- 다. 공작실(S6) : 7층 1개실 50석 규모, 강의실 및 작업공간
- 2. 「공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새벽별(L1) : 7층 50석 규모, 협업공간
 - 나. 샛별(M1~M5) : 7층 4개실(M1~M4) 22석 규모, 6층 1개실(M5) 6석 규모
 - 다. 회의공간 : 6층 1개실 30석 규모
 - 라. 키친 및 카페테리아 : 7층 20석 규모
 - 마. 사물함 : 7층 40개 규모
- 3.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인포데스크 : 7층 1개 2석 규모, 6층 1개 2석 규모
- 4.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 나. 음향 : 스피커, 앰프, 무선 마이크 등
 - 다. 업무용품 : 강의용PC, 인쇄용PC, 복사기, 팩스 등
 - 라.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등
 - 마.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포인트, 인쇄용지 등
 - 바.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 5. 「창작공간」(고래별) 및 창작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촬영스튜디오(S1) : 7층 1개실
 - 나. 녹음실(S2) : 7층 1개실 2석 규모
 - 다. 3D편집실(S3) : 7층 1개실 4석 규모
 - 라. 영상편집실(S4) : 7층 1개실 4석 규모
 - 마. 장비실(S5) : 7층 1개실
 - 바. 창작장비 : 7층 아이맥(iMac) 19대, 맥북(Macbook) 5대
- 6.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4조(이용시간)에 따라 운영된다.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
3.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4. 기타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5. 제12조(사용시간) 및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을 위반하는 자

제15조(사용신청) 「대여시설」 사용은 신청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대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이용 신청서」(양식 1, 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대여시설」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회원에 한한다.
3. 운영자는 「대여시설」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한 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1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시설」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5.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시설」 사용신청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대여신청 및 이용방법) 경기콘랩 「대여시설」 및 「공용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시설」 : 별동별(L2), 여우별(L3), 공작실(S6)
 - ① 신청방법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이용 신청서」(양식 1) 작성 및 날인 후 운영자 메일 제출 (승인제)
 - ② 예약가능기한 : 사용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 ③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 ④ 신청내용 : 문화콘텐츠 및 취·창업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전시, 교육 등
2. 「공용시설」 : 셋별(M1~M4)
 - ① 예약시간 : 당일 예약 당일 이용
 - ② 이용방법 : 현장 방문하여 인포데스크에 이용 가능한 시설 확인 후 입실확인서 작성 후 1회 2시간, 1일 최대 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퇴실시 운영자의 확

인 및 퇴실확인서를 작성함. 추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인포데스크에서 이용 종료 예정시간 30분 전 운영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없을 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용시설」 : 사물함

- ① 신청방법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사물함 이용 대장」(양식 2) 작성 및 운영자의 확인 (승인제)
- ② 신청기간 : 기간제(매월 첫 번째 개관일부터 운영일 기준 5일), 일일(매일)
- ③ 신청대상 : 기간제(1개월 이상 이용자), 일일(회원 누구나)
- ④ 운영방법 : 기간제 이용은 1개월 단위로 이용신청을 받으며 매월 첫 번째 개관일부터 운영일 기준으로 5일까지 받는다. 일일 이용은 인포데스크에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사물함 이용 대장」을 작성한 후 이용 가능하다.
- ⑤ 기간제 이용기간 종료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 동안 운영자는 유무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물함 이용 종료를 알려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물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물함 물건을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4. 기타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여 우선순위) 대여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경기콘랩 자체 프로그램에 우선 대여하고,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여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대여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1. 대여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여 조건을 어겨 대여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여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9조(대여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나. 대여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다.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
-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 「물품」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랩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랩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경기콘랩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4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23조(시설 및 물품사용료)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24조(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제25조(복사·인쇄 요금) 복사·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1인 1일 10매의 제한을 둔다. 해당 제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26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 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7조(안전사고) 경기콘랩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는 경기콘랩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